

## 안산시보육조례안

의 안 번 호	577
------------	-----

발의년월일 : 1996 . 11 . 25.  
발 의 자 : 김장훈의원외22인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에 따라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 보육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며,
- 영유아 및 아동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장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며,
- 나아가 여성의 근로기회 확대와 사회참여 보장으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보육위원회의 설치 (안 제2조)
- 나.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 다.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운영 (안 제16조)
- 라. 보조금 지원 (안 제21조)
- 마.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운영 (안 제26조)

### 3. 예산소요 : 별첨

#### 4.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

영유아보육법 제4조 (보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5조 (보육정보센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보육시설연합회)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보육시설의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비용의 보조)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 (영유아보육등)

## 안산시보육조례안

###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립보육시설,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지원과 방과후 보육사업의 확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보육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보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2. 보육시설 대표자
3.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4. 입소아동 보호자
5.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자
6.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부서에 근무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⑥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및 직영시설에 관한 평가를 하되 그 구성은 이해 당사자는 제외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 및 보조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립시설 수탁자 및 직영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
7. 방과후 보육사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영시설 및 보육정보센타 종사자 정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7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은 보육 수요조사를 통해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기존 시설로 수용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구청장)은 사전에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1개월동안 시·구청 게시판, 시청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에는 일정기간 수요조사를 거쳐 2개반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장애아 및 영아 전담시설, 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운영) ① 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 보육시설의 운영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 및 운영시설장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시장은 수탁자나 직영시설장 선정시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 공개 모집 또는 채용을 한다.
- ⑤ 직영시설 아동의 보육료는 시에서 일괄 수납한다.

제 9조 (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 제10조 (수탁자의 직영시설장의 의무)
  - ① 수탁자와 직영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와 직영시설장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직영시설장은 매년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⑦ 직영시설장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한다.

제11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것을 기준으로 보육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 수탁된 법인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원장이 재직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원장은 시 관할 구역내에서 3년간 공립시설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 (이의신청) 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직영시설장 근무기간 및 평가) 직영시설장의 동일 시설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평가는 2년마다 위탁시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종사자 임용 및 연령)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권 위임할 수 있다.

- ② 법인이나 단체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는 61세를,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타직종과 겸직할 수 없으며 동일직종이라도 겸직할 수 없다.
- ⑤ 시장은 직영운영 하는 시설에 종사자를 공개 채용하여 임면한다.

제14조 (수개이상의 위탁금지) 시장은 동일인(법인, 단체포함)을 시의 관할구역내에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직영시설장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정기감사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에 붙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직영시설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 4장 보육정보센타 설치 및 운영

제16조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정보센타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2항에 근거한다.

제17조 (보육정보센타의 구성) ① 보육정보센타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타의 장의 자격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단, 보육정보센타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육정보센타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④ 보육정보센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육지도원의 자격, 보육지도원 등의 임명, 보육지도원의 직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보육정보센타의 업무) 보육정보센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
3. 보육대상자의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4. 보육시설의 보육활동에 대한 장학지도
5.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6.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직영시설 입소아동의 입소신청서 접수 및 배치
10. 기타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제19조 (보육정보센타의 재정) ① 보육정보센타의 재원은 국고, 지방비 보조금, 외부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보육교사의 보수규정에 의한다.

③ 센타장의 수당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육정보센타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제20조 (등록)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 5장 보조금의 지급

제21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시는 공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민간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시행규칙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르며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 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조하되 보조비율은 시장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공립 및 직장, 민간, 가정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는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운영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시는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대하여 수장비와 특수감가상각비 드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수장비등 보조금은 설립 인가 및 신고된지 6개월 후에 지원한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육시설은 지원내역에 따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어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도 전항과 같다.

제23조 (전담 보육시설의 보조 등) 시장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예산을 확보하여 전담 보육시설의 장애아 및 영아담당 보육교사, 야간 (24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을 보조하고 보호자에게 부담이 큰 장애아 보육료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장려한다.

제24조 (보육시설연합회 보조)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보육시설 연합회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 6장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운영

제26조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6조와 여성발전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전과 방과후,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 (정규학교 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 (방과후 보육시설 기준등) 방과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필요한 사항 및 운영방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준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0조 (보육내용) 모든 위탁 또는 직영하는 시설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다.

제31조 (보육종사자의 재교육등) 시는 보육종사자 (방과후 보육교사 포함)를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등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보육종사자 경력인정)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중 유치원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유치원 근무경력은 보육시설에서도 인정한다.

제33조 (규칙)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안산시 보육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소요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총 계		1,398,258	524,649	273,103	600,506
국·공립	소 계	953,442	468,640	232,756	252,046
	인 건 비	843,552	468,640	187,456	187,456
	시설 관리 운영	19,290	-	-	19,290
	특수 근무 수당	90,600	-	45,300	45,300
민간·가정 보육시설	소 계	133,776	-	13,272	120,504
	특수시설 인건비	50,544	-	13,272	37,272
	운 영 비	47,232	-	-	47,232
	간 식 비	36,000	-	-	36,000
공 통	소 계	244,110	56,009	27,075	161,026
	아동 별지 원	131,610	51,359	25,680	54,571
	교재 교구 지 원	112,500	4,650	1,395	106,455
보 육 정 보 센 터		48,000	-	-	48,000
보 육 시 설 연 합 회		18,930	-	-	18,930

## 안산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77
------------	-----

제출년월일 : 1996. 11. 26  
제 출 자 : 보사·환경위원회  
박선호의원외 9인

### 1. 수정이유

- 지방자치체의 전면 실시에 따라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 보육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안산시보육조례안을 제정 코자 하는 조례로써,
- '96년12월23일 보육시설 관계자와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조문내용을 수정함.

### 2. 주요골자

- 안산시보육조례안 전반적인 조문내용을 수정함.

## 안산시보육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안산시 보육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안산시보육조례안

####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산시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보육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규정에 의거 안산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
2. 보육시설 대표자

3.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위원회 위원 1/3이상)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一

⑤ 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및 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
7.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장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7조 (설치) ①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시립보육시설은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위탁운영) ①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탁자 및 시설장 선정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제9조 (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볼일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평가 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 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관할 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종사자 연령 및 정보) ① 위탁운영하는 시설장은 61세,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 (수개이상의 위탁금지) 시장은 개인에게 시의 관할구역내에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감사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육정보센타 설치 및 운영

제15조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육정보센타를 사회복지법,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6조 (보육정보센타의 구성) ① 보육정보센타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 3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타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타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 한다.

④ 보육정보센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보육정보센타의 업무) 보육정보센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4. 보육시설의 보육활동에 대한 장학지도

5.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6.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기타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제18조 (전문인력 활용등) 시장은 보육의 질적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 센타내에 어학, 예체능 전공 교사, 대치교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보육정보센타의 재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0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시는 시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민간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단, 장애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③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도 제1항과 같다.

제22조 (장애인,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의 보조) 시장은 장애자, 영아 전담, 야간보육 시설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때
2.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때
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에 위반할때

제24조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6조와 여성발전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보육내용) 시립보육시설에서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

제26조 (보육종사자의 재교육등) 시장은 보육종사자(방과후 보육교사 포함)를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b>제 1장 총 칙</b>	<b>제 1장 총 칙</b>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립보육시설,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지원과 방과후 보육사업의 확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산시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립 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b>제 2장 보육위원회</b>	<b>제 2장 보육위원회</b>
<p><b>제2조(위원회의 설치)</b>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보육위원회 (이하 이원회)를 둔다.</p>	<p><b>제2조(위원회의 설치)</b> ..... 규정에 의거 안산시 보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p>
<b>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b>	<b>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b>
<p>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li> <li>2.~3. (생략)</li> <li>4. 일소아동 보호자</li> </ul>	<p>② ..... 각 호의 1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li> <li>2.~3. (현행과 같음)</li> <li>4. 보호자 대표</li> </ul>

원 안	수 정 안
5.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자 6. 시의회에서 추천하는자	5. 관계공무원 6. 시의회에서 추천하는자 (위원회 위원 1/3 이상)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부서에 근무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및 직영시설에 관한 평가를 하되 그 구성은 이해당사자는 제외한다.	<삭 제>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년 1회 ..... 필요하다고 하거나 ..... 3분의 1 이상이 ..... 요청하는 경우에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1.~3. (생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천 안	수 정 안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 및 보조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공립시설 수탁자 및 직영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	6.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및 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직영시설 및 보육정보센타 종사자 정체에 관한 사항	〈삭 재〉
9.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위원회 수당)..... ..... .... 지급할 수 있다..... ..... .....
제3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장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은 보육 수요조사를 통해 등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기존 시설로 수용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설치) ①..... ..... 시립보육시설은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등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원 안	수 정 안
<p>② 시장(구청장)은 사전에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1개월동안 시·구청 개시판, 시청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에는 일정기간 수요조사를 거쳐 2개반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장애아 및 영아 전담시설, 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립보육 시설에 장애아·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8조(공립보육시설의 적영 및 위탁운영)</p> <p>① 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공립 보육시설의 운영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수탁자 및 적영시설장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위탁운영) ① 시립보육시설은.....</p> <p>.....</p> <p>.....</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② 수탁자 및 시설장 선정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p>

원 안	수 정 안
<p>④ 시장은 수탁자나 적영시설장 선정 시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 또는 채용을 한다.</p> <p>⑤ 적영시설 아동의 보육료는 시에서 일률 수납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제9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볼일 수 있다.</p>	<p>제9조(위탁계약) ..... ..... ..... ..... 제한사항을 .....</p>
<p>제10조(수탁자의 적영시설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적영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와 적영시설장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 ..... ....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삭 제〉</p>

원 안	수 정 안
<p>③ 직영시설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⑥ (생략)</p>	<p>② 수탁자 및 시설장은 ..... ..... .....</p> <p>③~⑤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⑦ 직영시설장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한다.</p>	<p>⑥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p> <p>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제1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것을 기준으로 보육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p>	<p>제1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 .....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의사가..... .....</p>

원 안	수 정 안
3.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u>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u>	<삭 제>
4.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 제10조의..... ... 4. ..... 위탁계약 .....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된 법인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원장이 재직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원장은 시 관할구역내에서 3년간 공립 시설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 관할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이의신청) 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⑤ 제2항의 ..... 할때에는..... .....
제12조(직영시설장 근무기간 및 평가) 직영 시설장의 동일시설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평가는 2년마다 위탁시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삭 제>
제13조(중사자 임용 및 연령) ① 시장은 수 탁자에게 보육시설 중사자 임면권을 위임 할 수 있다.	제12조(중사자 연령 및 전보) ① 위탁운영 하는 시설장은 61세, 중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

원 안	수 정 안
<p>②법인이나 단체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위탁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는 61세를,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p> <p>④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타 직종과 겹칠 수 없으며 동일직종이라도 겹칠 수 없다.</p> <p>⑤시장은 직영운영 하는 시설에 종사자를 공개 채용하여 일면한다.</p>	<p>②시장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재정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p> <p>〈삭 재〉</p> <p>〈삭 재〉</p> <p>〈삭 재〉</p>
<p>제14조(수개이상의 위탁금지) 시장은 동일인(법인, 단체포함)을 시의 관할구역내에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p>	<p>제13조(수개이상의 위탁금지) 시장은 개인에게 ..... ..... .....</p>
<p>제15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 및 직영 시설장의 시설운영실태를 연1회 정기감사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에 붙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직영시설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4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정기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제4장 보육정보센타 설치 및 운영	제4장 보육정보센타 설치 및 운영
제16조(보육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정보센타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2항에 근거한다.	제15조(보육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타를 사회복지 법인·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신 설 >	
제17조(보육정보센타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타에는 보육정보센타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제16조(보육정보센타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타에는 보육정보센타의 장과 보육지도원 3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타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원 안	수 정 안
<p>③ 보육정보센타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p>	<p>③ 보육정보센타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p>
<p>④ 보육정보센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④ ..... 한다.</p>
<p>⑤ 보육지도원의 자격, 보육지도원등의 임명, 보육지도원의 직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삭 제 〉</p>
<p>제18조(보육정보센타의 업무) (생 약)</p>	
<p>1.~2. (생 약)</p>	<p>1.~2. (현행과 같음)</p>
<p>3. 보육대상자의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p>	<p>3. 보육수요 및 .....</p>
<p>4.~8. (생 약)</p>	<p>4.~8. (현행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9. 적영시설 입소아동의 입소 신청서 접수 및 배치	<삭 제>
10. (생 약)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전문인력 활용등) 시장은 보육의 질 적 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 정보 센터내에 어학·예체능 전공교사·대체 교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보육정보센타의 재정) ①보육정보센타의 재원은 국고, 지방비 보조금, 외부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9조(보육정보센타의 재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보육교사의 보수 규정에 의한다.	<삭 제>
③센타장의 수당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육정보센타의 재정으로 충당 한다.	<삭 제>

원 안	수 정 안
<p><u>제20조(등록)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타에 등록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lt;삭 제&gt;</u></p>
<p><b>제5장 보조금의 지급</b></p>	<p><b>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b></p>
<p><u>제21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시는 공립 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중·개축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u></p>	<p><u>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시립.....</u></p> <p>.....</p> <p>.....</p> <p>.....</p> <p>.....</p>
<p><u>② 민간 및 가족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시행규칙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르며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 하는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단, 장애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u></p>	<p><u>②.....가정.....</u></p> <p>..... 저소득층 아동</p> <p>을 우선 입소하는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단, 장애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p>
<p><u>③ 공립 및 직장, 민간, 가정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는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운영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u></p>	<p><u>③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u></p>

원 안	수 정 안
<p>④ 시는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대하여 수장비와 특수감가상각비 등을 재정이 허 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삭 제〉</p>
<p>⑤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 비, 수장비등 보조금은 설립 인가 및 신고 된지 6개월 후에 지원한다.</p>	<p>〈삭 제〉</p>
<p>⑥ 보조금은 지원받은 보육시설은 지원 내 역에 따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어 보고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2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보 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 른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생 략)</p>	<p>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 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제23조(전담 보육시설의 보조등) 시장은 보 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예산을 확보 하여 전담 보육시설의 장애아 및 영아 담당 보육교사, 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에 대 한 인건비 및 수당을 보조하고 보호자에게 부담이 큰 장애아 보육료 지원방안을 강 구하며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장려 한다.</p>	<p>제22조(장애인, 영아 전담, 야간보육시설의 보 조) 시장은 장애자, 영아 전담, 야간보육 시설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서 보조할 수 있다.</p>
<p>제24조(보육시설연합회 보조) 시장은 영유 아 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보육시설 연합회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제25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생 약)</p> <p>1. ~2. (생 약)</p> <p>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 규정 .. .....</p>

원 안	수 정 안
<u>제6장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운영</u>	〈삭 제〉
<u>제26조(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생략)</u>	제24조(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현행 과 같음)
<u>제27조(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 은 통교전과 방과후, 공휴일 또는 방학기 간(정규학교 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u>	〈삭 제〉
<u>제28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u>	〈삭 제〉
<u>제29조(방과후 보육시설 기준등) 방과후 보 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필요한 사항 및 운영방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 칙 제22조에 준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u>	〈삭 제〉

원 안	수 정 안
<p>제30조(보육 내용) 모든 위탁 또는 직영하는 시설에서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p>	<p>제25조(보육 내용) 시립보육 .....</p> <p>.....</p>
<p>제31조(보육 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는 보육 종사자(방파후 보육교사 포함)를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보육법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6조(보육 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 종사자(방파후 보육교사 포함)를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2조(보육종사자의 경력 인정) 모든 보육 시설 종사자 중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유치원 근무경력은 보육시설에서도 인정한다.</p>	<p>〈삭 제〉</p>
<p>제33조(규칙) 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원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 력을 발생한다.	제1조(시행일) .....시 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생 략)	제2조(폐지조례) (현행과 같음)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시행되기 ..... ..... 종료하는 ... .....